



1.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개념은 역사적으로 발전되고 형성된 개념이므로, 근대국가에서의 일반적인 경찰개념을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 작용’이라고 할 경우, 이는 각국의 실정법상 경찰개념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할 때, 보안경찰은 독립적인 경찰기관이 관할하지만, 협의의 행정경찰은 각종의 일반행정기관이 함께 그것을 관장하는 경우가 많다.
- ③ 18~19세기에 등장한 법치국가는 절대주의적 경찰국가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성격을 띠었고, 이와 같은 법치국가적 경찰개념이 처음으로 법제화된 경우로는 1794년의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을 들 수 있다.
- ④ 경찰의 개념을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구분할 때, 사법경찰(수사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정답 ④

- ④ (X)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작용의 본질은 ‘공공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현재·장래지향형 작용**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법경찰**은 범죄수사·피의자 체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즉 형사사법 작용을 하는 경찰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작용의 본질은 **과거지향형 작용**이다. 따라서 사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① (O).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작용’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독일 행정법학에서 행정작용 중 경찰작용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을 추상화한 개념으로서 실무상 개념이 아닌 **이론적·학문적으로 발전한 개념**이다. 이는 각국의 실정법상 형성된 경찰개념인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② (O). **보안경찰**이란 광의의 행정경찰 중에서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않고 **오로지 경찰작용만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작용**을 말하고, **협의의 행정경찰**이란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특별한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부수작용으로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작용**을 말한다. 보안경찰 활동은 보통경찰기관이 담당하지만, 협의의 행정경찰 활동은 일반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③ (O). 18세기 말~19세기 초의 법치국가시대의 주요 법률 중 하나인 **프로이센 일반란트법**(1794년, 경찰관청은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이다)은, **법치국가적 경찰개념을 처음으로 법제화한 법률**이다. 이후 **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을 거쳐 **프로이센 경찰행정법**(1931년, 경찰관청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 제정되었다.

2. 경찰의 위험방지 임무에서 말하는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개입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행위책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상태책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 ② 외관상 위험이 존재할 때의 경찰개입이 적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
- ③ 경찰의 범죄예방 및 위험방지 행위의 준비는 추상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 ④ 위험혐의의 존재는 위험조사차원의 경찰개입을 정당화시킨다.

정답 ②

- ② (X) ‘**외관적 위험**’이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단, 적법한 개입이라 하더라도 인한 피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다.
- ① (O). ‘**위험**’은 경찰개입의 전제조건이 되므로 ‘**위험**’하면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 이 때 위험의 발생원인이 ‘**행위책임**’에 기인한 것이든 ‘**상태책임**’에 기인한 것이든 구분하지 않는다.
- ③ (O). ‘**위험**’은 경찰개입의 전제조건이 되므로 ‘**추상적 위험**(개별 사안이 아닌, 일반적으로 이런 사안에서는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의, 구체적 위험의 예견가능성)’의 상황에도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 다만, **추상적 위험 상황에서의 경찰개입은 임의적·비권력적 작용에 한정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 **경찰의 범죄예방 및 위험방지 행위의 준비는 명령·강제와 같은 권력적 작용이 아닌 임의적·비권력적 작용에 해당한다**.
- ④ (O). ‘**위험혐의**’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이 되나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찰개입은 위험의 존재 여부가 명백해 질 때까지 예비적 조치(조사 차원의 경찰개입)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예] 지하철 역사에 폭발물 설치 제보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비상임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정답 ④

- ① (X)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법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X) 노력하여야 한다.

경찰법 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X) 연임할 수 없다.

경찰법 제23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④ (O)

경찰법 제26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경찰조직의 냉소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니더호퍼(Niederhoffer)는 사회체계에 대한 기존의 신념체제가 붕괴된 후 새로운 신념체제에 의해 급하게 대체될 때 냉소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 ② 조직 내 팽배한 냉소주의는 경찰의 전문직업화를 저해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 ③ 회의주의와 비교할 때, 냉소주의는 조직 내 특정한 대상을 합리적 의심을 통해 신뢰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 ④ 냉소주의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직관리방안은 인간을 본래 게으르고 생리적 욕구 또는 안전의 욕구에 자극을 주는 금전적 보상이나 제재 등 외재적 유인에 반응한다고 상정하여 조직이 권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맥그리거(McGregor)의 인간모형에 기초한다.

정답 ②

- ① (X). 니더호퍼(A. Niederhoffer)는 기존의 신념체제가 붕괴되었으나 이를 대체할 신념이 부재하는 경우의 아노미(혼란)현상이 냉소주의라고 하였다.
- ② (O). 냉소주의는 '충성'이라는 도덕적 규범을 약화시켜 조직에 대한 반발과 일탈현상을 초래하게 되므로, 관료제의 확일적 명령체계 등과 함께 경찰의 전문직업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③ (X). 회의주의는 개별적(특정) 사안에서 합리적 의심을 하여 비판을 하는 태도를 말한다. 냉소주의는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한 사안에 대해 이유없는 불신을 하는 태도를 말한다.
- ④ (X) 맥그리거(McGregor)의 Y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가 냉소주의 극복방안이다. 해당지문은 X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구분	X이론	Y이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은 근본적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므로 가능하면 일하기를 피하려 한다 •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압, 통제, 벌로 다스려야 한다. • 구성원은 책임을 피하려 하며 공식적인 지시가 있어야만 움직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을 일을 휴식이나 여가와 같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 구성원이 조직목표에 동의한다면 자기지시 및 자기 통제를 발휘한다 • 책임을 수용하고 기꺼이 감수하는 태도로 자발적으로 움직인다.
조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전적 보상과 엄격한 통제로 조직을 관리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관리하여야 한다.

5. 부정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은호의를 제공받은 경찰관이 도덕적 부채를 느껴 이를 보충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선한 후속행위를 하는 상황은 미끄러운 경사 (slippery slope) 가설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② 대의명분 있는 부패(noble cause corruption)와 Dirty Harry문제는 부패의 개념적 징표를 개인적 이익 추구를 넘어 조직혹은 사회적 차원의 이익 추구로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 ③ 고객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원하는 이익을 확실히 취하기 위해 높은 가격의 뇌물을 지불하는 상황을 부패로 이해한다면, 이는 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가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부정부패 정의 중 시장중심적 정의와 가장 관련이 크다.
- ④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①

- ① (X) 작은호의를 제공받은 경찰관이 도덕적 부채를 느껴 선한 후속행위를 하는 상황은 작은호의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것으로서 작은호의에 대한 허용론 입장에 가깝다. 반면 미끄러운 경사 가설은 작은 호의가 점점 더 멈추기 어려운 부패로 이어지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서 작은호의 금지론과 유사하다.
- ② (O). 대의명분 있는 부패 내지 숭고한 부패(noble cause corruption)라 함은, 비록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패행위라 하더라도 ‘더 큰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괜찮다.’라는 믿음에서 저질러지는 부패를 말하고, **Dirty Harry 문제**는 1971년 제작된 미국 형사액션물 Dirty Harry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정당화 되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부패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에서 찾는 것을 넘어, 더 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실정법을 위반하는 부패에 주목한다는 특징이 있다. [예]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의 내지 목적을 위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위험한 용의자를 구속하는 행위
- ③ (O) 하이덴하이머의 세 가지 유형 부정부패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시장중심적 정의	고객들은 잘 알려진 위험을 감수하고 원하는 이익을 받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높은 가격 (뇌물)을 지불하고 공직자는 직무를 판매하는 거래행위 가 부패
관직중심적 정의	뇌물수수행위와 특히 결부되어 있지만 반드시 금전적인 형태일 필요가 없는 사적인 이익에 대한 고려의 결과로 권위를 남용 하는 행위가 부패
공익중심적 정의	국민이나 공직자가 공동체 이익에 반하는 특수한 이익을 선호함으로써 공익을 해치는 행위 가 부패

- ④ (O)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6.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한 **찰활동의 기준**과 그 내용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 경찰활동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궁극적인 목적이며 법집행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 ②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 과거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甲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모든 문제는 남편에게 있다고 단정지어 생각하는 경우는 이 기준에 어긋난다.
 - ③ 공공의 신뢰 - 乙경찰관이 공명심이 앞서서 상부에 보고도 없이 탈주범을 혼자서 검거하려다 실패하였다면 이 기준에 어긋난다.
 - ④ 공정한 접근 보장 -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편들기는 이 기준에 어긋난다.

정답 ③

③ (X) 지문은 공공의 신뢰(Public Trust)가 아닌 협동(Team Work)의 실패사례이다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자들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甲총경은 A전자회사의 요청으로 시간 당 30만 원의 사례금을 약속받고 A전자회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3시간짜리 강의를 월 1회, 총 3개월간 진행하였다. 이 경우 甲총경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사례금 총액은 270만 원이다.
- ③ B자동차회사의 요청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를 마치고 소정의 사례금을 약속받은 乙경무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를 마친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사단법인 C학회가 주관 및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토론을 한 丙경감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동법 시행령이 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O)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들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직무와 관련 없더라도 어떤 명목으로든 1회 100만/ 연간 300만 초과 수수·요구·약속금지!**

② (X) 외부강의를 3시간 했다고 하여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배(60만원)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甲총경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사례금 총액은 180만 원이다.

대통령령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별표]
-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 2. 적용기준
 -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O)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② 공직자들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O)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직자등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시·도경찰청은 감사관으로 한다.
- ②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각각의 위원장과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정기회의는 각각 분기 1회 개최한다.
- ④ 경찰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청 인권위원회나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④

① (X)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다.

【해설】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5조(구성) ③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한다.

② (X)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해설】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7조(임기) ①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X) 경찰청은 월 1회, 시·도경찰청은 분기 1회

【해설】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1조(회의) ② 정기회의는 경찰청은 월 1회, 시·도경찰청은 분기 1회 개최한다.

④ (O)

【해설】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6조(위촉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9.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적극행정 운영규정」상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결을 하지 않는다.
- ②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의한 면책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 ③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처리 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과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④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은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④

① (O)

【해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면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O)

훈령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4조(면책 대상자) 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③ (O)

훈령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자체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④ (X)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이다.

대통령령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소극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0.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 ② 경찰활동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 ③ 사후적 대응보다 사전적 예방 중심의 경찰활동 전개에 주력한다.
- ④ 경찰은 지역사회 내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공적 주체들은 물론 시민단체 등 사적 주체들과도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정답 ①

- ① (X) **전통적 경찰활동**은 경찰만이 유일한 법집행기관으로서 **경찰권한의 강화**를 통해 범죄를 해결하는 것을 경찰활동의 주된 역할로 본다. 반면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과 시민이 모두 경찰활동의 주체가 되어 **경찰의 분권화**를 통해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경찰활동의 주된 역할로 본다. 따라서,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것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목표로서 옳은 설명으로 볼 수 있으나, 경찰력 집중이 아닌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다는 점에서 틀린 지문이 된다.
- ④ (O).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경찰과 협력대상이 되는 대상은 지역주민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각종 단체들도 포함된다.



11. 다음은 경찰이 수행하는 범죄예방활동 사례(<보기 1>)와 톤리와 패링턴(Tonry & Farrington)의 구분에 따른 범죄예방전략 유형(<보기 2>)이다.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p><보기1></p> <p>(가)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전담 경찰관(SPO)은 학교에 배치되어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학교폭력 관련 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등 사후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학대예방경찰관(APO)은 미취학 혹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 점검하고 학대피해 우려가 높은 아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아동의 안전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p> <p>(나)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경찰순찰을 확대함으로써 공식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거나 혹은 아파트 입구 현관문에 반사경을 부착함으로써 출입자의 익명성을 감소시켜 범행에 수반되는 발각 위험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p> <p>(다)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무관용 경찰활동을 지향함으로써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 범죄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p>
<p><보기2></p> <p>㉠ 상황적 범죄예방 ㉡ 지역사회 기반 범죄예방 ㉢ 발달적 범죄예방 ㉣ 법집행을 통한 범죄억제</p>

(가) (나) (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④

- (가) - ㉢ 발달적 범죄예방론이란, 특정 개인의 범죄적 잠재성 발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발달단계 초기(아동·청소년기 등)에 개입하여 위험요인을 차단하고 보호요인을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론이다. 지문의 학대예방경찰관(APO) 개입은 아동에 대한 보호요인을 증대시키는 활동이고, 학교전담경찰관(SPO)는 청소년에 대한 위험요인을 차단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 (나) - ㉠ 상황적 범죄예방론이란 범죄행동에 따르는 노력과 위험은 증대시키고 보상은 낮추어 범죄를 억제하고자 하는 이론을 말한다. 지문의 공식 감시기능 확대나 반사경 부착은 범죄행동의 발각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서 상황적 범죄예방론과 관련이 깊다.
- (다) - ㉣ 무관용 경찰활동을 통해 처벌의 확실성을 높임으로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형벌의 확실성·엄격성·신속성을 강조하는 억제이론(법집행을 통한 범죄억제)과 관련이 깊다.

12. 에크와 스펠만(Eck & Spelman)은 경찰관서에서 문제지향 경찰활동을 지역문제의 해결에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4단계의 문제해결과정(이른바 SARA 모델)을 제시하였다. 개별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사단계(scanning)는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회적으로 발생하지만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심각한 중대범죄 사건을 우선적으로 조사대상화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 ② 분석단계(analysis)에서는 각종 통계자료 등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며, 당면 문제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문제분석 삼각모형(problem analysis triangle)을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 ③ 대응단계(response)에서는 경찰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 내의 여러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을 추구하고, 상황적 범죄예방에서 제시하는 25가지 범죄예방기술을 적용해 볼 수도 있다.
- ④ 평가단계(assessment)는 과정평가와 효과평가의 두 단계로 구성되며, 이전 문제해결과정의 환류를 통해 각 단계가 지속적인 순환 과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답 ①

① (X) 에크와 스펠만의 SARA모델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성 프로그램 중 문제지향 경찰활동(POP)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모델이다. 그런데 지문에서 언급된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중대범죄’**는 경찰이 지역사회 공동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차원의 범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조사 (Scanning)	• 문제라고 생각되는 사건을 분류하고 조사 하는 과정을 말한다. [예] 1942년 건설된 B아파트단지는 높은 범죄율로 도시 최악의 주택단지로 인식되고 있었다.
분석 (Analysis)	• 문제의 원인과 범위, 예상대응방안 및 효과를 파악 하는 단계를 말한다. [예] 파견 경찰관의 주민 인터뷰 및 현장조사 결과, B단지는 주거침입절도가 가장 심각했고, 노후화와 관리부재로 물리적 보안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대응 (Response)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는 단계 를 말한다. [예] 경찰은 시 관계자들과 함께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버려진 자동차나 쓰레기들을 수거하였다. 아울러 도시개발국과 연계하여 소유주들에게 유지보수를 위한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 (Assessment)	• 대응이 적절하였는지 평가 하는 단계를 말한다. [예] B아파트단지의 생활조건이 현저하게 개선되었고, 주거침입절도가 35%이상 감소하였다.

13. 한국경찰의 역사적 사실을 과거에서부터 현재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
- ㉡ 경찰서비스현장 제정
- ㉢ 국가수사본부 신설
- ㉣ 「경찰법」 제정
-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설치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①

- ㉡ 1991.5.31. 「경찰법」 제정
- ㉣ 1998 경찰서비스현장 제정
- ㉠ 2000.09.29.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
- ㉤ 2006.07.0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설치
- ㉢ 2021.1.1. 국가수사본부 신설

1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 ②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법치국가의 원리와 자의금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에는, 기부채납한 토지 가액이 그 주택사업 계획의 100분의 1 상당의 금액에 불과하고 사업자가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착오로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조요청서를 보내자 그 때서야 비로소 부관의 하자를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은 당연무효이다.
- ④ **甲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이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甲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제2종 소형]를 취소한 것은 甲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해설] ①

① (O) ② (X)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다. → 행정기본법상 자기구속원칙만 명문규정 없음!

행정기본법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X) 사안의 경우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요지판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불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사업자의 주택사업계획은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임에 반하여,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토지 가액은 그 100분의 1 상당의 금액에 불과한 데다가, 사업자가 그 동안 그 부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착오로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조요청서를 보내자 그 때서야 비로소 부관의 하자를 들고 나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7. 3. 11. 96다49650)

④ (X) 복수의 운전면허 사이에 포함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함께 취소하더라도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요지판례】

■ 갑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갑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에 대하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갑이 각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18. 2. 28. 2017두67476)

15. 「행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고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되,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② 행정작용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이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 ③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으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③

① (X) 출생일을 산입하여(산입하지 않고 X) 만(滿) 나이로 계산한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② (X)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공익 ≥ 사익).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 1. 행정목적 달성에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 2. 행정목적 달성에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닐 것

③ (O) 행정청의 재량판단이 필요한 영역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행정기본법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X)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까지 사인의 신뢰를 보호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하지 여부의 판단은 위법성 판단과 달리 합목적적·정책적 고려도 포함되므로, 위임 및 위탁기관이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나아가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사무처리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①

① (X) 위임이 아닌 위탁에 관한 설명이다.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O)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지휘·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O)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O)

【요지판례】
 ■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하지 여부의 판단은 위법성 판단과 달리 합목적적·정책적 고려도 포함되므로, 위임 및 위탁기관이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나아가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사무처리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7. 9. 21. 2016두55629)

17.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 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④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처분이다.

정답 ①

① (X)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수 없고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요지판례】
 ■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88. 2. 23. 87누1046).



② (O)

【요지판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서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 특징이 있으며, 그 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대판 1993. 7. 13. 92다47564).

③ (O)

【요지판례】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판 1990. 3. 23. 89누4789)

④ (O)

【요지판례】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인바,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교육기관인 동 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는 학장이 교육목적실현과 학교의 내부질서유지를 위해 학칙 위반자인 재학생에 대한 구체적 법집행으로서 국가공권력의 하나인 징계권을 발동하여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국가의 교육행정에 관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임이 명백하다(대판 1991. 11. 22. 91누2144).

1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수사본부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 ②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로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 ③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④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정답 ③

① (O)

경찰법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 (O)

경찰법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⑦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로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 1.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2.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제6항 제2호의 판사·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제6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X)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경찰법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④ (O)

경찰법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③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19.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 ② 동료 경찰관에 대한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면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 ③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O)

【요지판례】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대판 1999. 10. 8. 99두6101).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② (X) 파면·해임과 같은 배제징계를 받아 공직에서 배제된 자는 몇년이 지나든 다시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③ (O)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1조(징계등 의결 기한) ①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O)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등 의결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20.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수권조항이란 경찰권의 발동근거가 되는 개별적인 작용법적 근거가 없을 때 경찰권 발동의 일반적·보충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수권된 일반조항을 말한다.
-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는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 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 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사생활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④

① (O) 일반적 수권조항은 경찰관의 **발동권한을 일반적·포괄적으로 경찰에 부여**하는 조항을 말하며, 현행법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를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② (O)

【요지판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대판 1998. 8. 25. 98다16890). →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 상에 방치된 트랙터 1대에 대하여 이를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결과, 야간에 그 도로를 진행하던 운전자가 위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다가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③ (O)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4(소송 지원)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X)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1. 행정행위의 부관은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담
- ② 조건
- ③ 기한
- ④ 기간

정답 ①

① (O) **부담만이 그 자체가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이외의 부관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다수설·판례).

22.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종전 법률 시행 당시에 행해진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②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더라도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있지 않다면 정식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① (O)

【요지판례】

■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종전 법률 시행 당시에 행해진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대결 2020. 11. 3. 2020마5594)

② (O)

【요지판례】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20. 4. 29, 2017도13409)

③ (X) 인장·지장이 없더라도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요지판례】

■ 구 형사소송법 제59조에서 정한 기명날인의 의미, 이 규정이 개정되어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한 경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결 2019. 11. 29. 2017모3458).

④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경찰질서벌의 경우 고의·과실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대상은 고의·과실이 필요하다.

23.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보상이 확정된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에 “테러경보 발령·대테러 작전 수행”을 명시하고 있다.

정답 ①

① (O)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 ②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 교·사·유·미)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013 채용 1차]

- 1.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 2.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 3.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 4.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② (X). 경찰장비와 관련하여 주로 공부하는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⑥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X) 보상이 확정된 때가 아닌,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④ (X) 테러경보 발령·대테러 작전 수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24.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병력이 행정대집행 직후 “A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A차 대책위’ 라 함)가 또다시 같은 장소를 점거하고 물건을 다시 비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해 사건 장소를 미리 둘러싼 뒤 ‘A차 대책위’ 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려는 것을 불허하면서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③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 지려고 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급박한 상태일 때에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제1조 제2항에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선언하여 경찰비례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행정 영역에서의 헌법상 과소보호 금지원칙을 표현한 것이다.

정답 ①

① (O)

【요지판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대판 2021. 10. 14. 2018도2993). → 경찰 병력이 행정대집행 직후 대책위가 또다시 같은 장소를 점거하고 물건을 다시 비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성 장소를 미리 둘러싼 뒤 대책위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려는 것을 불허하면서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 등 대책위 관계자들이 이와 같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 병력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② (X)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③ (X)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요지판례】
 ■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급박한 상태일 때에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대판 2021. 11. 11. 2018다288631).

④ (X) 경찰비례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행정 영역에서의 과잉금지원칙(과소보호금지 X)을 표현한 것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5.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③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④ “익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전부를 삭제하거나 일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④

① (O), ② (O)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③ (O)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④ (X) 가명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그리고 삭제의 대상은 ‘일부’이고 대체의 대상은 ‘일부 또는 전부’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6.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취소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 ③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청구할 수 있다.
-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 (O). 이 외에도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X) 의무이행심판에 대한 설명이다.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 **부작위위법확인심판 X**

③ (X)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판례에 의해 서면주의가 일부 완화되어 있다(완화된 서면주의).

행정심판법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X)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심판법 제44조(사정재결)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

27.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 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의 () 에 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 ① 취소소송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③ 기관소송 ④ 당사자소송

정답 ④

④ (O). 지방소방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나 법관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요지판례】

■ **명예퇴직한 법관이 이미 수령한 수당액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명예퇴직수당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차액의 지급을 신청함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라도, 그 의사표시는 명예퇴직수당액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결국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대판 2016. 5. 24. 2013두14863).



28.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분업의 원리 - 가급적 한 사람에게 동일한 업무를 분담시킴으로써 특정 분야에 대한 업무의 전문화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 ② 계층제의 원리 -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계층화 함으로써 상·하 계층 간에 직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도록 한다.
- ③ 조정과 통합의 원리 - 구성원의 노력과 행동을 질서있게 배열하고 통일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경찰행정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한다.
- ④ 통솔범위의 원리 -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직원의 수를 의미하며, 무니(Mooney)는 이러한 통솔 범위의 원리를 조직편성 제1의 원리라고 하였다.

정답 ④

④ (X) 무니(J. Money)는 “조정과 통합의 원리는 조직의 제1의 원리이며 가장 최종적인 원리이다.”라고 하였다.

29. 동기부여이론 중 내용이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이론
- ② 맥그리거(McGregor)의 X이론·Y이론
- ③ 포터와 롤러(Porter & Lawler)의 업적만족이론
- ④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론론(동기위생이론)

정답 ③

③ (X) 과정이론에 해당한다.

내용 이론	의의	인간의 특정 욕구가 동기부여 를 일으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론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이론 • 허즈버그(Herzberg)의 이원론 • 아지리스(C. Argyris)의 성숙·미성숙 이론 등 • 맥그리거(McGregor)의 X이론·Y이론 • 샤인(E. Schein)의 복잡인 모형(4대 인간관 모형) • 맥클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과정 이론	의의	인간의 특정 욕구가 직접적으로 동기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와는 별도의 다양한 요인들이 동기부여 과정에 작용 한다고 이해하는 이론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터&롤러(Porter & Lawler)의 업적만족이론 • 브룸(Vroom)의 기대이론 • 아담스(Adams)의 공정성이론 등

30.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기준 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결정하는데서 생기는 폐단을 시정하려고 개발한 것이다.
- ② 품목별 예산제도는 일반 국민들이 정부사업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 ③ 계획예산의 핵심은 프로그램 예산형식을 따르는 것으로서, 기획(planning), 사업구조화(programming), 예산(budgeting)을 연계시킨 시스템적 예산제도이다.
- ④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이다.

정답 ②

② (X)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활동별로 예산이 편성되므로 국민이 경찰의 활동과 목적을 이해하기 쉽다. • 업무규모와 단위, 단위원가가 분석·계산되므로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 • 개별품목별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므로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다. • 해당 부서의 업무능률을 측정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쉽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원가 및 업무측정단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연구개발과 같은 무형적 사업 •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에는 적용이 어려워 기본 경비에 대한 적용이 곤란하다. • 품목별 예산제도에 비해 회계책임이 불분명해지고 입법적 통제가 어려워진다.



31.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 및 탄약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간이무기고란 경찰인력 및 경찰기관별 무기책임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② 무기·탄약을 대여 받은 자는 그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 종료시에는 감독자 입회아래 무기탄약 입출고부에 기재한 뒤 즉시 입고하여야 한다.
- ③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가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 ④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가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 (X) 집중무기고에 대한 설명이다.

해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 "집중무기고"란 경찰인력 및 경찰기관별 무기책임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017 채용2차]
- 4. "간이무기고"란 경찰기관의 각 기능별 운용부서에서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집중무기고로부터 무기·탄약의 일부를 대여 받아 별도로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013 채용2차]

② (O)

해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8조(무기·탄약 등의 대여) ⑤ 무기탄약을 대여 받은 자는 그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 종료시에는 감독자 입회아래 무기탄약 입출고부에 기재한 뒤 즉시 입고하여야 한다.

③ (O)

해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 ①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 필요적 회수(강제회수)

- 1.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 2.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 3. 사의를 표명한 자

④ (O)

해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 ④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일시보관

- 1.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
- 2.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 3. 기타 정황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2.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II급 이상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문서의 접수·발송·복제·열람 및 반출 등의 통제에 필요한 규정을 따로 작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가 생산한 비밀을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3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I급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정답 ①

① (X) I급 이상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제22조(비밀관리기록부)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I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암호자제는 암호자제 관리기록부로 관리한다.



② (O)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제29조(비밀문서의 통제)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문서의 접수·발송·복제·열람 및 반출 등의 통제에 필요한 규정을 따로 작성·운영할 수 있다.

③ (O)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제31조(비밀 소유 현황 통보) ①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④ (O)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제25조(비밀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가 생산한 비밀을 제3조의3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I 급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33. 「경찰 감찰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감찰”이란 복무기강 확립과 경찰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감찰관의 직무활동을 말한다.
- ② 감찰부서장은 소속 감찰관에 대하여 감찰관 보직 후 3년마다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경찰기관의 장은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 업무분야 및 경찰관서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④ 감찰관은 감찰관 본인이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감찰대상이 된 때에는 당해 감찰직무(감찰조사 및 감찰업무에 대한 지휘를 포함한다)에서 제척된다.

정답 ②

① (O)

훈령 경찰 감찰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감찰”이란 복무기강 확립과 **경찰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감찰관의 직무활동을 말한다.

② (X) **2년마다**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훈령 경찰 감찰 규칙 제8조(감찰관 적격심사)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감찰관에 대하여 감찰관 보직 후 **2년마다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O)

훈령 경찰 감찰 규칙 제13조(특별감찰) **경찰기관의 장**은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 업무분야 및 경찰관서**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수 있다.

④ (O)

훈령 경찰 감찰 규칙 제9조(제척) 감찰관은 다음 경우에 당해 감찰직무(감찰조사 및 감찰업무에 대한 **지휘를 포함한다**)에서 제척된다. → **당연히 빠지는 것!**
1. 감찰관 본인이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감찰대상**이 된 때
2. 감찰관 본인이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인 때
3. 감찰관 본인이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감찰대상이 된 소속공무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이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4. 감찰관 본인이 조사대상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때



34.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을 설치한다.
- ② 순찰팀은 범죄예방 순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현장 치안활동을 담당한다.
- ③ 지역경찰관서장은 지역경찰관서의 운영에 관하여 총괄 지휘·감독한다.
- ④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방문 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②

- ① (X) 지역경찰관서를 설치권자는 시·도경찰청장이다.

예규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설치 및 폐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 ② (O)

예규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순찰팀) ① 순찰팀은 범죄예방 순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현장 치안활동을 담당하며, 팀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 ③ (X) 경찰서장은 지역경찰관서의 운영에 관하여 총괄 지휘·감독한다.

예규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지휘 및 감독) 지역경찰관서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경찰서장 : 지역경찰관서의 운영에 관하여 총괄 지휘·감독
 3. 지역경찰관서장 : 지역경찰관서의 시설·장비·예산 및 소속 지역경찰의 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휘·감독

- ④ (X)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방문 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업무는 상황근무에 해당한다.

예규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상황 근무) ①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작동여부 확인
 2.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3.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
 4. 중요 사건·사고 발생시 보고 및 전파
 5. 기타 필요한 문서의 작성

3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 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 ② 위계(偽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 ③ 사법경찰관리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는 가능하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판매 또는 광고할 수 없다.

정답 ④

- ① (O)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② (O). 강간·강제추행은 미수범을 처벌한다. 반면 간음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구분기준**

- 강간·강제추행은 미수범 처벌 O, 간음은 미수범 처벌 X
- 결과적 가중범 내지 결합범은 미수범 처벌 X
- 성착취물은 생산행위(제작·수입·수출)는 미수범 처벌 O, 이용행위는 미수범 처벌 X
- 사람 자체 매매행위는 미수범 처벌 O, 성 매매행위는 미수범 처벌 X
- 유인·권유는 기본적으로는 미수범 처벌 X. 단, 유인·권유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미수범 처벌 O

③ (O)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1조(→ 성착취물 제작·유통 등) 및 제15조의2(→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죄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 → **카메라 이용 촬영물·복제물 등 반포 등 + 영리목적**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④ (X)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판매 또는 광고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3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②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③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④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정답 ②

② (X) **임시조치**에 해당한다.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1.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1.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2.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2.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보호시설 인도(피해아동등 의사 존중)	3.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3.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의료기관으로 인도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간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37. 「도로교통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예외 없이 터널 안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동법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 ④ 물로 입 안을 행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①

- ① (X) 모든 차의 운전자는 터널 안에 차를 주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전조등이나 차폭등, 미등을 켜고 정차 또는 주차가 가능하다는 예외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 1.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② (O)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	소방·구급·혈액 + 경찰	그 외의 긴급자동차
제1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적용 X
제2호	앞지르기의 금지	적용 X
제3호	끼어들기의 금지	적용 X
제4호	신호위반	적용 X
제5호	보도침범	적용 X
제6호	중앙선 침범	적용 X
제7호	횡단 등의 금지	적용 X
제8호	안전거리 확보 등	적용 X
제9호	앞지르기 방법 등	적용 X
제10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적용 X
제11호	주차금지	적용 X
제12호	고장 등의 조치	적용 X

* 제1호 속도제한의 경우,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O)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④ (O)

【요지판례】

■ 물로 입 안을 행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06. 11. 23. 2005도7034).



3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권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사람이 테러로 인해 생명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사람의 유족에 대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말하는 “테러 단체”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가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 ③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 ④ 테러로 인하여 신체·재산·명예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③

- ① (X)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사람은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테러방지법 제16조(특별위로금) ① 테러로 인하여 생명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권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X)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테러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 ③ (O)

테러방지법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 ④ (X)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명예 X)의 피해를 입은 국민

테러방지법 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 ①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질서유지인”이란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 ㉡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관할경찰관서장은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48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라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③

㉠ (X)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임명**한 자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 18세 이상, 임의적

㉡ (O)

【요지판례】

■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만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헌재 2014. 1. 28. 2011헌바174 등).

㉢ (X)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통고를 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O)

【요지판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집회·시위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야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18. 5. 11. 2017도9146).

40.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은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육상이나 항내의 안전을 해할 때, 승무원 이외의 사람이나 대한민국의 국민에 관계가 있을 때 또는 중대한 범죄가 행하여졌을 때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발 등을 수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를 미군 당국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경찰관은 외국군함에 속하는 군인이나 군속이 그 군함을 떠나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③

① (O)

【문경】 범죄수사규칙 제214조(외국 선박 내의 범죄) 경찰관은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내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 1. 대한민국 육상이나 항내의 안전을 해할 때
- 2. 승무원 이외의 사람이나 대한민국의 국민에 관계가 있을 때
- 3. 중대한 범죄가 행하여졌을 때

② (O)

【행정안전부령】 경찰수사규칙 제91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



③ (X)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를 검사(미군 당국X) 에게 통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령 경찰수사규칙 제92조(한미행정협정사건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고발 등을 수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95호서식의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O)

운령 범죄수사규칙 제212조(외국군함의 승무원에 대한 특칙) 경찰관은 외국군함에 속하는 군인이나 군속이 그 군함을 떠나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범 그 밖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체포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